

#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

(주)동성코퍼레이션은 상법 제530조의11 및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동성티씨에스와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[ 아 래 ]

1. 분할합병방법 : (주)동성코퍼레이션 (분할합병 상대회사)과 (주)동성티씨에스 (분할되는 회사)가 (주)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 부문을 (주)동성티씨에스로부터 인적분할 후 (주)동성코퍼레이션에 합병하여 (주)동성코퍼레이션과 (주)동성티씨에스를 모두 존속시키는 방법
2. 분할합병비율 : (주)동성코퍼레이션 : (주)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부문 = 1 : 0.0000000
3. 분할합병 대상의 현황
  - 가. 상호 : (주)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부문
  - 나. 본사 소재지 :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81 (송현리 1183)
4. 분할합병기일 : 2017년 7월 1일
5. (주)동성코퍼레이션과 (주)동성티씨에스 건자재 사업부문의 흡수합병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,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- 가. 행사절차 : 2017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- 나. 제출기간 : 2017년 5월 11일 ~ 2017년 5월 24일
 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- 1) 명부주주 : 2017년 5월 24일까지 당사 기획관리팀에 제출 (☎ 02-6190-8887)  
(송부처 :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16 AIA타워 10층 (주)동성코퍼레이션 기획관리팀)
    - 2) 실질주주 : 2017년 5월 21일까지 (명부주주보다 2영업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- 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분할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##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동성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동성코퍼레이션과 (주)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부문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주 주 번 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7년 월 일

성명 : (인)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2017년 5월 10일

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

대표이사 박충열